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-5653(2015. 9. 4.)

2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,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진단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\* 장애인진단서 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는 등

3. 의료기관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,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장애진단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니, 장애진단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[별지 제3호 서식]상 장애진단서 양식. 끝.

\* 붙임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-검색창에 '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' 입력 및 검색-[서식3] 다운로드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-협회업무-기획정책 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대리 김성은 팀장 정교숙 국장 방성민 사무총장 김현수

시행 : 기획정책 제 2015-430 ( 2015.09.14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16 전송 02-705-921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kse@kha.or.kr